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 명확화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조항을 신설하고
- 바우처택시 도입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추가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 이용대상자 수정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동지원센터 운영 명확화(안 제4조)
-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신설(안 제4조의2)
- 이동지원센터 기능 추가(안 제5조)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범위 수정(안 제6조)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 수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¹⁾ 및 제12항²⁾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구미시 고아읍 신원대로 174)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범위의 수정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2)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 결과,

-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2항3)의 개정(2022.1.18.)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항(장애인 교통안전 교육, 성폭력예방 교육 등)을 규정함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행에 따라 차량 이용 신청 접수 및 이용자의 자격확인, 요금 정산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이용등록 업무를 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함에 따라 신속한 이용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 다만, 방문 신청이 어려운 교통약자인 만큼 전자우편(E-mail), 전자팩스 등 온라인·비대면 신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2호가목4)에 따라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천-구미역 이용객 및 구미에 생활권을 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4) 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나)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다)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